

2020. 09.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발 간 사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기본방향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 국가의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의 큰 틀로,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인구 구조 변화 적응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워라벨’로 일컬어지는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성의 독박육아’로 표현 되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라는 지역을 가족친화 적인 생활환경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은 도민 모두가 다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충남의 가족친화 관련 제도와 환경 수준을 진단해보고 타 지역의 우수한 정책과 프로그램 사례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향후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연구모임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주신 김연 · 김기영·정병기·김한태·최훈·여운영·황영란 의원님과 차성란 교수님, 김혜중 회장님, 김영주 간사, 임우연, 안수영, 태희원 박사님 등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충청남도의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09. .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 김옥수

목 차



I.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1
II.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7
III.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21
IV. 정책연구모임 결과 및 제안	29
부 록	33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I.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I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1. 추진목적

- 충청남도의 가족친화 환경 및 관련 정책 점검
- 타 지역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사례 탐색
- 충청남도의 가족친화적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정책 제안

2.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08월 (8개월)
- 사업내용
 -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법령 및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파악
 - 중앙정부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정책 동향 검토
 - 가족친화 환경조성(마을환경) 관련 타 시도 정책 사례 연구
 -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3. 세부사업 계획

① 연구활동

- 사업개요
 -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정책의 실효성 점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연구조사 활동

② 타 지역 사업 추진 사례 학습

○ 사업개요

- 관련 단체 및 기관의 활동 현황과 성과에 대한 탐색과 토론을 통하여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추진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학습

○ 사업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제도 수립과 추진현황 파악
- 타 지역의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한 사업 추진현황 파악
- 타 지역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현황 파악

③ 정책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전문가, 유관단체, 정책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상호토론과 의견수렴

④ 연구결과 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배포와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연구과제 종합 보고서 발간 (1회)

4.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2020년 1월중)



❖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비모임 (2020년 2월중)

※ 대표 및 간사



❖ 연구모임 제1차 모임 개최 (2020년 4월중)

※ 코로나19 확산으로 애초 3월에서 4월로 연기



❖ 연구모임 제2차 모임 개최 (2020년 5월중)



❖ 연구모임 제3차 모임 개최 (2020년 6월중)



❖ 연구모임 제4차 연구모임(토론회) 개최 (2018년 7월중)



❖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배포 (2020년 9월중)

5. 기대효과

- 충남의 가족친화적 제도 및 문화 확산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Ⅱ.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II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1.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등록 및 구성

- 2020년 1월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함
- 도의회 8명의 의원과 전문가 6명의 총 14명으로 회원을 구성함
-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표	김 옥 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0.8월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2020.8월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회 원	김 기 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김 한 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	여 운 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	정 병 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최 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황 영 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2020.8월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임 우 연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안 수 영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태 희 원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차 성 란	대전대학교 아동상담복지학과 교수	
"	김 혜 중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간사	김 영 주	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2. 1차 연구모임

□ 모임 개요

- 때 · 곳 : 2020. 4. 23.(목), 14:00~16:00/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김옥수 의원, 김연 위원장, 김한태 의원, 여운영 의원,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황영란 의원, 차성란 교수(대전대),
김혜중 회장(충청남도여단체협의회), 김영주 간사,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태희원 연구위원 13명
- ※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일순 가족다문화팀장 배석
- 내 용 : 중앙정부 가족친화 환경조성 정책 추진현황,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
조성 관련 정책 현황 및 과제 발제와 토의

□ 주요 결과

① 발제 주요 내용

- 1) 중앙정부의 가족친화정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정책 사업추진 영역 및 내용
 -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 교육 등 현황
 -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정책 사업추진 영역 및 내용
 -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사업, 모두가족품앗이(돌봄공동체) 등
- 2)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 정책현황 및 과제
 - 충남의 가족친화 수준
 -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기본계획(국가), 충남 가족정책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 부서별, 영역별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사업 현황
 - 향후과제

② 토론 결과

-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등 추진하나 일·생활 균형지수의 충남 수준은 하위권이고, 지표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자체 관심도의 비중이 너무 큼
- 북유럽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워라밸이 실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반이 아직 약하고, 특히 충남과 같은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생활균형 지수의 조사에 있어서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도시/농어촌의 구분과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
- 농촌의 지역적 현실에 맞는 워라밸 모형은 아직 중앙정부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확대 필요
-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동체성이고,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아동/노인을 서로 돌보는 것이 이상적
- 이러한 방식의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높지만, 유희공간(경로당 등)을 찾는 것도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모임의 활동과 내용을 풀어나갈지 어려워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이러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여성들의 돌봄공동체(욕구)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음
- 동네에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갈 프로그램, 인력이 필요하고(촉진자, 활동가),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무엇인지 등을 시스템화해야 함
- 이러한 돌봄공동체 형성과 완성이 단계까지는 장기간의 시간과 단계별 투입해야 할 프로그램 활동, 교육 등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들을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전담기구가 초기→발전기→완성기까지 셋팅 과정에 개입하여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울진, 서울, 제주 사례
 - 홍성 사례(어린이집연합회와 MOU체결 어린이집 공간 활용 등)
 - 공주 유구읍 사례 (협동조합으로 돌봄을 풀어나가려는 시도, 그러나 돌봄공간 물색, 기타 운영상의 애로사항)

- 먼저 사업을 만들어놓고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 지원 하는 방식이 바람직
- 정책적 지원이 별도의 전담기구보다는 현재 건가센터와 같은 기능과 역량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기존의 기구에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필요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함
- 보령의 경우 폐광지역의 마을에서 폐광기금 등을 활용하여 광산촌 노인돌봄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지역이 많고 이러한 노인돌봄의 수요가 높고, 돌봄(공동체)의 운영을 촉진할 촉진자를 마을단위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귀농·귀촌자의 역할이 중요
-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우리 도시/농촌 실정에 맞게 모델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받아도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라는 제안이나 지원도 없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됨
- 기존 가족관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고령 여성의 경우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자신을 위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필요
- 가족친화 환경조성은 크게 보면 일·생활 균형(기업 중심), 돌봄의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농업은 쉬는 날이 별로 없고, 이런 농촌의 특성에 맞는 돌봄모델이 필요함
- 돌봄공동체 유형은 도시형, 농촌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모델을 이번 연구모임에서 찾아보고 만들어가는 논의를 하고, 그 결과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라도 시범적으로 1개씩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좋겠음

◆ 활동사진



3. 2차 연구모임

□ 모임 개요

- 때 · 곳 : 2020. 5. 14.(목), 14:00~16:00/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김옥수 의원, 김연 위원장, 김한태 의원, 여운영 의원,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황영란 의원, 차성란 교수(대전대),
김해중 회장(충청남도여단체협의회), 김영주 간사,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태희원 연구위원 13명
- ※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박일순 가족다문화팀장, 맹준호, 안세아 여성정책개
발원 연구위원 배석
- 내 용 : 돌봄공동체 사업·운영 사례 발제(2개)와 토론

□ 주요 결과

① 발제 주요 내용

1) 돌봄공동체 사업·운영 사례 1 (이미경 은평구마을방과후센터 단장)

-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건립과 운영까지의 역사, 주요사업
 - 마을연계지원, 혁신교육지원, 마을방과후지원
- 청소년 동아리 운영, 청소년도서관 작공,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등 마을도서관
건립 활동과 주요 프로그램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주민청원, 기획 참여 등)
- 여성일공동체 마을엔 카페 창업 배경과 활동
- 타 자원과의 연계 사업과 활동
 - 타 기관, 은평구, 서울시 등
- 향후 노인돌봄과 의료협동조합 연결, 병원설립과 마을 안에서의 노인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모색

2) 돌봄공동체 사업 · 운영 사례 2 (박민영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 이사장)

- 송악면에서 공동육아와 청소년 돌봄 등 사업 추진 배경
 - IMF 경제위기 속에서 송악면의 조손가정 등 증가와 돌봄공백 발생
- 마을에서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노력
 - 송악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설립과 운영, 마을주민의 참여와 후원
 - 폐교위기 초등학교의 활성화, 학교 내 마을도서관 설립과 운영
- 마을, 학교와 연계한 돌봄, 주민참여, 공동체적 연대 확대
 - 생태지원, 도서지원, 놀이지원단 운영, 주민이 교사로 참여하는 지역학교 프로그램, 송악아빠모임 운영
- 송악마을희망교육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 학부모대표단, 교사대표, 송악아빠모임, 지역아동센터, 송악동네사람들 협동조합 등 참여, 학습과 토론회
- 마을 속 공유공간의 조성 and 운영
 - 해유 등 공유공간 조성 and 활용, 송악마을장, 마을예술제 등 사업
- 향후 아동에서 노인까지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함께돌봄’ 체계 구축을 마을 미래 비전으로 모색

② 토론 결과

- <질문1> 아파트단지 경로당 활용하여 공동육아를 하고 싶은 여성, 돌봄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들이 있고, 마을돌봄사업을 테마로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나 이 사업을 기획, 운영할 활동가가 없고, 이러한 활동가들을 육성할 교육이 없는 상황인데 발제자들의 경우 처음 시작하였을 때 교육 등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발전해왔는지?
- <답변> 초기 미지원일 때는 마을주민의 후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원 봉사자로 동원하여 계속 활동하기는 어렵고, 중년일자리로서 생각있고 책임있는 책임 주체를 발굴해야 하며, 외부강의, 워크숍 등 끊임없이 역량을 높여야 함

- <질문 2> 구산동마을도서관이 빈집 8채를 이어서 완공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 <답변>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질문 3> 여성7명이 마을엔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왜 7명만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 병원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답변> 도서관자원봉사자 24명에게 창업을 이야기했고, 이 중에서 처음 14명이 결의했다가 돈을 덜 벌더라도 의미있게 창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 7명 이 시작하게 됨. 나중에 은평구 물푸레북카페(기업지원) 등 다른 마을의 북카페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
- <답변> 은평구의 ‘살림’이라는 의료협동조합이 운영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협동조합과 함께 돌봄네트워크 형성, 노인돌봄 문제의 지역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을 안에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병원 설립을 추진(2년 안에 건립 예정, 올해 10억원 모금계획)
- <질문4>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사람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왔는가?
- <답변> 해유공간이 1년 반 동안 비어져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의 승인과 협력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 즉 한달에 1번 정도 마을 어르신들과 교류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 <질문5> 공주에서 공동육아와 돌봄활동을 함께 하려는 여성들의 모임이 있으나 이들의 애로사항은 공간이 없다는 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 행정이나 의원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현실, 이를 위해서 세대 간,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답변: 전문가의견> 도서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서관 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활용가능
- 돌봄모임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역량이 성장하지는 않음. 활동가들이 ‘돌봄’이라는 공통의 어려움과 관심 사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지그룹을 만들어가고 확산해가는 구조화가 안되는 문제가 있음
- 정책적으로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기부여→교육→컨설팅 등 활동가들의 성장과 모임의 성장,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모델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나 큰 틀에서의 모형을 그려 보고, 이 모형을 갖추어나가도록 활동가 양성, 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책 필요

4. 3차 연구모임

□ 모임 개요

- 때 · 곳 : 2020. 6. 25.(목), 14:00~16:00/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김옥수 의원, 김연 위원장, 여운영 의원,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차성란 교수(대전대), 김혜중 회장(충청남도여단체협의회), 김영주 간사, 태희원 연구위원 9명
- ※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 박일순 가족다문화팀장 배석
- 내 용 : 돌봄공동체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례 발제(1개)와 토의

□ 주요 결과

① 발제 주요 내용

1)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례

(박태영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 서울시 마을사업의 시작과 역사
 - 서울시-풀뿌리 집담회를 거쳐 사단법인 마을 설립(2012)
 - 미국 로체스터 NBN 모델에 기반한 주민주도의 서로돌봄과 마을공동체 회복, 마을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
- 각 구마다 마을법인, 마을넷, 시민협력플랫폼 등 유형별 마을네트워크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마을’에서 서울시의 마을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수탁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각 마을네트워크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

-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은 수평적 거버넌스 토대마련+ 민간 지원 역량강화를 목표로, ‘시민참여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에 있음
- 주요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상담, 교육, 지역자원조사, 연구, 네트워크, 기록과 아카이빙, 홍보,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추진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활동가 발굴, 육성, 마을카페 및 커뮤니티, 공동육아 및 부모커뮤니티와 품앗이 육아, 마을경제, 생협 등 협동경제, 마을미디어(신문, 라디오, 마을기록 등), 마을축제 및 행사, 마을교육(학습, 토론, 연구)의 분야로 추진
- 공모사업은 5단계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단계 교육상담→2단계 주민모임 형성지원→3단계 활동지원→4단계 공간지원→5단계 종합적 마을계획의 순으로 주민모임과 주민들의 성장 및 활동을 지원함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결과

- 다차 참여자일수록 주체의 성장이 이루어짐
- 적극적 참여층은 여성, 30~40대, 중산층
- 2012~2017년 동안 사업참여자는 13만명, 모임형성 지원단계 사업은 매년 1천개 규모로 유지

○ 마을활동가와 일자리

- (여성)활동가 성장전략은 공모사업 참여자→마을지원 활동가→마을강사→마을현장 연구원, 공론장 촉진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PM으로 성장, 활동하는 것
- 여성 활동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 생애주기별 욕구변화와 활동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 30~40대는 육아정보 커뮤니티, 육아피로로 인한 취미활동 등 욕구가 높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마을지원 활동가, 마을강사 등 프리랜서 일자리, 단시간 노동 일자리에 대한 욕구 높음

○ 마을활동가 필요역량

- 마을공동체, 공간운영 능력, 회계, 행정, 주민교육 등 업무 역량, 지역문제 해결 능력, 갈등조정 및 시민감수성(민주적 감수성) 역량

- 단계별 지원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주민모임 초기는 민주주의 회의기법, 갈등관리, 공간모임 단계에서는 단체운영 전반, 공간 프로그램 등을 교육

② 토론 결과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주민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교육 필요, 특히 마을 활동가들은 봉사가 아닌 일자리로서 고정적 급여가 어느정도 보장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대하여 정보도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해도 계획서 작성 등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오산재단에서는 이러한 중간지원 방식으로 서류작성 등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중간지원기관(조직)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세밀한 지원, 역량강화 전략이 필요
- 제주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가족친화센터(이름은 조금씩 다름)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돌봄모임 등 참여자들에게 컨설팅, 모임운영 및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과 추진 검토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활성화, 주민자치와 결합한 큰 틀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충남은 현재 농촌 마을공동체 지원(농정국), 공동체활동지원 사업(공동체협력관)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가족친화/돌봄 영역에서의 활동가 육성이나 모임 지원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

따라서, 우선 가족친화/돌봄 영역에서 주민모임과 활동가들을 양성,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추진할 필요 있음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추진 틀로서 이 추진체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거점센터와 같은 틀에서 약간의 인력(코디네이터),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들의 돌봄공동체/모임에 대한 컨설팅, 활동가 양성, 주민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음

- 돌봄 등 여성의 생애주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관심 사안을 결합하여 궁극적으로는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에서는 이러한 활동가 양성과 모임 지원이 ‘돌봄=여성’이라는 기존의 성역할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이러한 돌봄사업, 지원에서 남성의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임

◆ 활동사진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Ⅲ.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III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1. 추진목적

- 15개 시군의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을 지역 여성단체, 의원, 공무원 등과 공유하고, 지역 단위에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의견수렴의장으로 활용

2. 추진내용

□ 추진 개요

- 때 · 곳 : 2020. 7. 16.(목), 16:00~17:30/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김옥수 의원, 김연 의원, 여운영 의원, 정병기 위원장, 김기영 의원, 최훈 의원, 차성란 교수(대전대), 김혜중 회장(충청남도여단체협의회), 김영주 간사,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 11명
- ※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맹준호 연구위원, 안세아 연구위원 배석
- 내 용 :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발제와 토론

□ 주요 결과

① 발제 주요 내용

1)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차성란 대전대 아동상담복지학과 교수)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등장배경
 - 가족가치의 변화→ 출산, 양육기피 현상 대두
 - 가족생활의 중요성 강조, 돌봄부담의 경감 필요성 증대
 - 일·가정 양립, 돌봄의 사회적 분담 전략, 방법 필요→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두 영역
 - 관주도적 방식은 양적성과 측면에서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참여
 - 의식의 변화가 이어질 때 실질적인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가능한 질적 측면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의 정책 개입
 -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서로가 배려하는 삶의 방식
 -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족친화마을환경 확산을 기대하기는 너무 긴 시간 필요
 - 본질적 특성은 자주(自主)이므로 정책의 역할은 촉발, 촉진, 동기부여,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 주민자치사업의 특성
 - 자발적 주민참여, 사업의 양적확산 어려움, 참여자들의 가치관 공유 필요(공동체 의식), 상담·컨설팅에 대한 요구

- 행정지원의 핵심적 역할
 - 공간확보, 관련 조례 제정, 공간 리모델링 예산 확보지원, 주민 이해관계 개입 해결

-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업무)
 - 주민자치 사업의 주체들을 연결하는 다리
 - 주민과 행정 사이의 연결
 - 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연결
 - 운영체계 안정화 지원

- 지자체의 대응
 - 성과도출이 용이한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영역 사업
: 부산, 광주, 서울, 전남 등
 -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경계 불분명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 틀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시도, 대구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일부 수행
- 충청남도의 정책환경
 - 도시, 도농복합, 농촌의 혼재
 - 가족친화환경조성 전문인력 부족
 - 정책사업으로서 시도경험 없음
: 시범사업으로서 효과검증 및 홍보 가능
 -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부담
: TFT 형태의 운영, 거점센터에 전담팀 배치 등 시도 가능
- 장기전략
 -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동기부여(시범사업, 공모사업을 통한 촉진)→가족친화 마을 조성 기초(관계, 사람, 공간만들기)→지속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공동체 운영 콘텐츠 구축 및 교육, 컨설팅 지원)
- 충남의 가족친화 비전
 - 가족과 함께(개인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일터가 있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있고, 이웃과 어울려 놀며, 건강한 삶으로 전 생애를 지낼 수 있는 곳

② 지정토론

■ 토론자

이지은(드림즈마을협동조합 대표), 김인숙(홍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권수인(천안백석동주민자치센터 복지분과부위원장)

<이지은 대표>

- 공주시 유구 지역의 현황
- 유구 교육 및 돌봄환경의 특성
 - 학생들의 가정환경 편차 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수가 증가 추세
 - 맞벌이 가정이 많아 자녀돌봄시간 부족,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사교육 의존도 높음
- 가족친화환경조성에 대한 의견
 - 드림즈마을협동조합 창립 후 마을학교 시작, 복합문화공간 카페 운영
 - 공동체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하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지역사회가 메꾸어 나가야 함
 - 지역의 돌봄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김인숙 센터장>

- 가족친화 환경조성은 가족돌봄, 여러 가지 가족문제 해결, 가족기능 강화의 가능성을 높여줌
- 모임구성,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성 필요하며, 이들이 서로 정보공유 필요, 또 공모사업 시 기존 활동모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촉진할 필요 있음
- 지역 맘카페 등에 지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

- 도농 맞춤형 정책 필요
 - 당진, 천안의 젊은 여성과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세대 간 연령 차이가 크고, 다문화가족이 많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여건 다름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모이는 것이 어려움.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변화된 환경에서 준비나 연구 필요

<권수인 부위원장>

- 민관협치가 중요하고, 관에서는 정책 당사자의 요구를 민원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 있음
- 우리가 공간마련 등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아파트 동장이나 관리소장 등 협조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관에서는 중재역할, 허브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가는데 단계가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원 조직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③ 기타 토론

- 유구지역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과 답변
 - 협동조합의 자격으로 위탁조건이 안되어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이 협동조합이 모범인으로 운영
 - 돌봄센터의 센터장과 돌봄인력의 인건비,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운영비를 쓰고 있음
- 드림즈마을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과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의 방향이 충돌
 -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 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
 - 돌봄을 위탁받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문제와 한계

- 돌봄공동체 모임과 활동은 사례마다 다르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
- 모임 구성원들이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모임이 성장하는 것은 활동 과정 속에서 가능하며, 단기간에 불가능
 - 행정에서도 단기실적 위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지원 필요

◆ 활동사진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IV. 정책연구모임 결과 및 제안

IV

정책연구모임 결과 및 제안

1.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추진기반 강화 제안

①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가족친화 마을환경, 직장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전문인력 육성,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근거 마련

②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추진과 점검 강화

- 2019년도에 수립된 5개년 계획인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고,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면서 연도별 실행목표와 개선안을 마련

③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관련 사업 추진,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상담 등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기업, 마을 단위 주민들의 주체적인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육성을 담당
- 1안) “(가칭)충남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 2안) 거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내에 별도의 팀으로 조직, 설치

④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정책 당사자-지원조직 간의 연결망 강화

- 중간지원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
- 주민모임, 주민활동가 등과 학계, 현장 전문가가 연계될 수 있는 연결망 구축

2. 충남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① 마을돌봄공동체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주민 주도의 돌봄공동체 조직 및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수의 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시범사업 방식으로 도시/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

② 마을돌봄공동체 활동가 인큐베이팅 및 성장 지원

- 돌봄공동체 등 가족친화 마을환경 창출과 관련한 모임에 대한 컨설팅, 상담, 교육 등 지원체계 마련
- 단계별 성장 로드맵 수립과 활동가들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 충남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① 일·생활균형 우수 실천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 직장 내 가족친화 제도 계획수립과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원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 공간 변화, 직장 내 직원들의 여가 등 휴식 지원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우수하게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원

② 찾아가는 직장 교육, 컨설팅 강화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찾아가는 직장교육 및 상담 실시
- 기업 맞춤형 제도 운영과 도입 유도
- 기업주, 관리자, 중장년 직원, 신입직원 등 대상별 교육

③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협력 강화

- 지자체,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 사업자 및 노동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용포럼 등 민간단체,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 강화
-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정보 공유, 이슈에 대한 논의 및 협력사안 발굴을 위한 정례적인 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부 록

1. 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법령

- 1)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2)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충청남도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 정책토론회 발제 원고

3.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부록 1》가족친화 환경조성 관련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12. 14.] [법률 제174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3.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2.1.>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2. 2. 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9. 15., 2020. 6. 9.>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0. 6. 9.>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④ 삭제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⑥ 삭제 <2012. 2.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 6. 11., 대통령령 제2821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5. 1.>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1. 삭제 <2011. 4. 6.>
2. 삭제 <2011. 4. 6.>
3. 삭제 <2011. 4. 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3. 25.>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1조 삭제 <2011. 4. 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3. 15.>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경영·법률·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3. 15.>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查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02-20 조례 제 44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지원제도 :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족 초청 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개정 2020.4.1.>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3. “가족친화기업”이란 노동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4.1.>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⑤ 도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6. 가족친화 문화 확산
7.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9.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내 기업·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①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

5.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도립시설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상의 문화시설에 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10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하여야 한다.
- ③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직장보육에 관한 홍보
 7. 그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수여하는 가족친화 인증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 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
 - 나.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2.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구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표창 시 우대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우대
 4. 그 밖에 도 또는 공기업의 기업 관련 시책 시행 시 우대
-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기업의 발굴·육성
2. 가족친화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확산
5. 가족친화 기업 포상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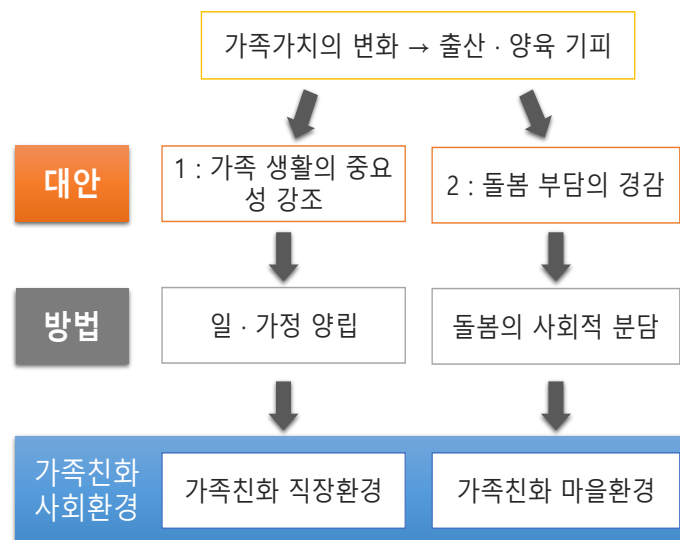
《부록 2》 정책토론회 발제 원고

발제자 : 차성란(대전대 교수)

충청남도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2020. 7. 16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차성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등장배경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목적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
 - 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
 - 개념정의 :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 제 3, 4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 “가족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최인희 외, 2016; 최인희 외 2018)

정책 요구의 시대적 변화

- 사회의 경제, 문화,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의 삶에 대한 요구도 변화
- 철도, 도로, 중공업, 화학 등 산업경제의 성과에 집중하는 정책
- 생활 SOC 사례에서 보는 정책 흐름의 변화



공동체 돌봄 참여자들의 이야기

- 주입식 교육이나 경쟁교육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는 그런 조건을 찾기 쉽지 않았거든요. 없었어요.
- 그 너무 복잡한 데서 아이들을 밀어 넣고 싶지 않더라고요. 공부보다는 좀 그런(숲, 바다에서 살았던) 추억 쪽의 자산을 주고 싶어서
- 저는 잘 노는 사람이 잘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ㅎㅎ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래서 저도 일할 때는 엄청 일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미친 듯이 놀기도 하고, 잘 놀게 해주고 싶었어요.
- 참고 : 미간행 연구논문입니다. 인용은 논문 출간 이후로 해 주십시오.

공동체 돌봄 참여자들의 이야기

-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렇게 살았던 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내 자녀에게 그걸 경험시켜 주고 싶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거에 동의한 사람들
- 더불어 사는 것이 선(善)
- 이 생태환경을 함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거죠.
- 참고 : 미간행 연구논문입니다. 인용은 논문 출간 이후로 해 주십시오

가족친화에 대한 정책 요구

- 직업 생활의 경제적 성과 편향에서 탈피해 여가 • 개인생활 • 가족생활을 통해 얻는 행복 향유의 요구
- 1차적, 가시적 조건으로서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 잘 드러나지 않으나 가족친화적 삶을 위한 장(場)으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서 개인생활, 가족생활의 기회를 제공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두 영역

- 적어도 양적 성과는 관주도적 방식이 일정 수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참여
- 의식의 변화가 이어질 때, 실질적인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가능한 질적 측면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의 정책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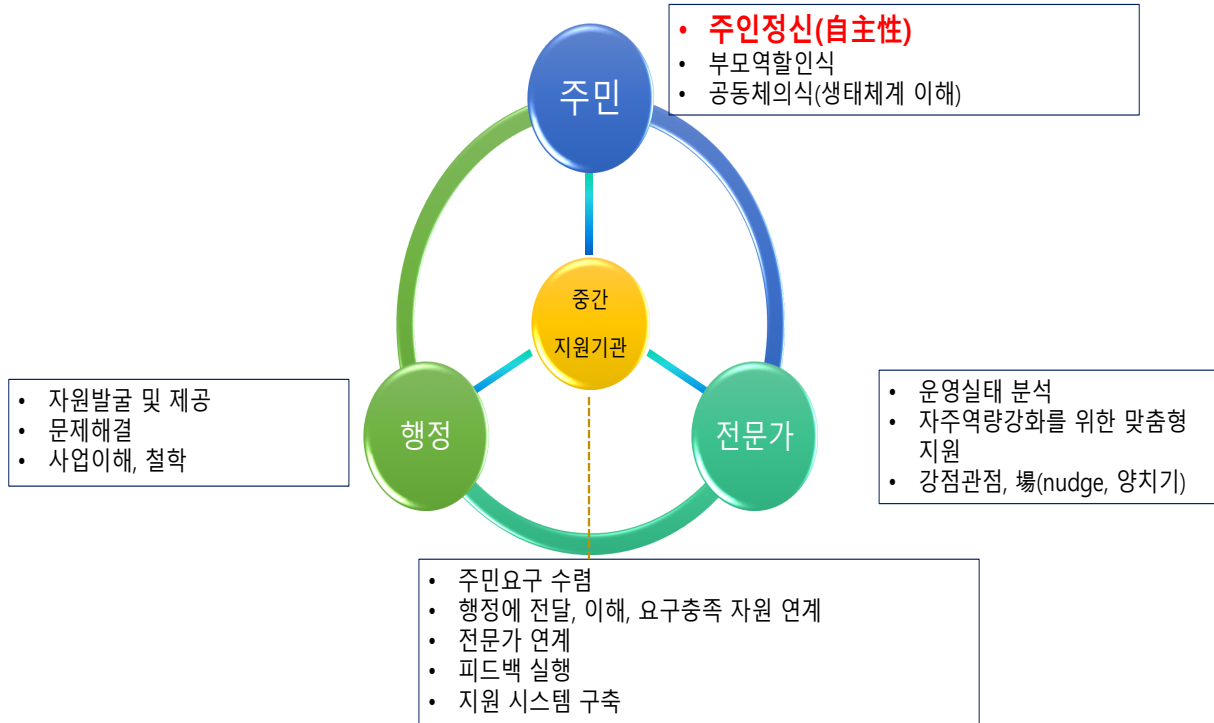
-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서로가 배려하는 삶의 방식
 - 초고도 경쟁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갈등 확대
 - 다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 저하
-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족친화마을환경 확산을 기대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함.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움
 - 공동체 유대가 형성, 유지되는 단계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림
- 본질적 특성은 자주(自主)이므로 정책의 역할은 촉발, 촉진, 동기부여, 지원 요구에 대한 응답.

주민자치사업의 특성

- 자발적 주민 참여
 - 동기부여 필요(예산지원 공모)
- 사업의 양적 확산 어려움
 - 초기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체감 기회 제공
 - 성과를 내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소요
- 참여자들의 가치관 공유 필요 - 공동체 의식
 -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
 - 의식 부재시 예산 지출에 초점 둔 공모사업으로 그칠 가능성
 - 의식 부재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움
- 상담·컨설팅에 대한 요구
 - 지리적, 사회인구적 특성, 공동체의식, 생애주기 단계 등에 따라 형성과정에서의 갈등, 문제해결의 다양성

지원체계 필요 : 가치관 교육, 사례별 컨설팅, 갈등해결 및 회의,의사결정 기법 습득, 예산관리 등 업무 역량교육, 촉진자로서 활동가 양성

주민자치 방식(공동체) 돌봄의 3요소, 또는 4요소



행정지원의 핵심적 역할

- 공간 확보
- 관련 조례 제정
- 공간 리모델링 예산 확보 지원
- 주민 이해관계 개입 해결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업무)

- 주민자치 사업의 주체들을 연결하는 다리
 - 주민-행정-전문가 그리고 이들을 연계하는 업무조직
- 주민과 행정 사이의 연결
 -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 어려움
 -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 자원 접근성의 문제
- 주민과 전문가 사이의 연결
 - 다양한 사례 축적된 컨설팅 전문가 양성, 배치
 - 관련 분야 전문가 연계(리모델링, 놀이프로그램, 문화예술분야, 요리 등)
- 운영체계 안정화 지원
 - 교육 콘텐츠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 마을활동가 발굴, 육성
 -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상담
 - 자치구 마을사업 상담
 - 서울시 마을사업 전 맞춤형 전문컨설팅**
 -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활성화,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예술창작소, 공동주택 공동체 등)
- 마을공동체 교육
 - 마을활동가 교육(퍼실리테이션, 갈등해결)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지원사업



또다른 어려움,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경계

- 정책 목적의 차이
 - 마을만들기
 - 농촌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마을기
 -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통해 돌봄과 여가를 누리는 행복한 삶
- 정책 성과를 위한 기본적 가치 지향성의 차이
 - 수단으로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인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참여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삶이 되는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 민간활동의 특성이 강함

• 가족정책으로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함

지자체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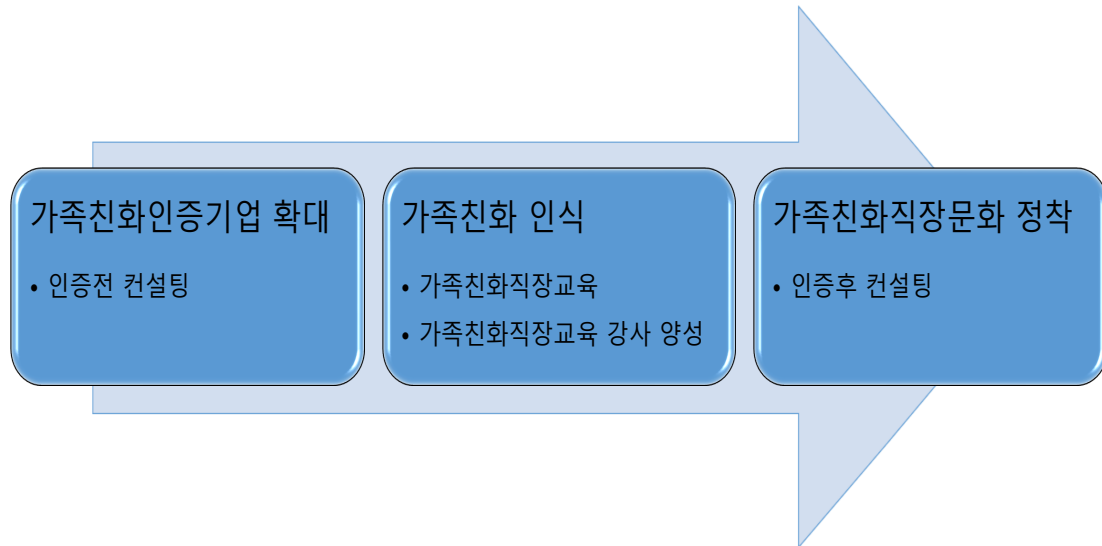
- 성과 도출이 용이한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영역 사업
 - 부산, 광주, 서울, 전남 등
-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경계 불분명
 -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친화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이해 불충분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 틀로서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시도
 - 대구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사업 이해

대구지역 가족친화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안내						
사업명	혁신가족친화마을	상동가족친화마을	볼로가족친화마을	동천가족친화마을	감삼가족친화마을	고산가족친화마을
	행복마을만들기 "福작福작"	상상 그 이상의 상동!!	글·그림으로 채워 가는 가족친화 볼로마을	소통하는 마을, 공감하는 동천마을	감삼가족친화마을 "토요일을 부탁해"	고산을 잇다
아이사랑 어울림 사업	엄마아빠랑 바느질해요 • 기간: 7, 8, 9월(3회) • 모집: 20명 	상동 역사 연극 • 기간: 7~8월(7회) • 모집: 15명 상동 꿈끼 합창 • 기간: 8월(3회) • 모집: 20명	아이들과 책글 캠프 • 기간: 5~10월(12회) • 모집: 5세~13세 15명 	어울림 그림책놀이 • 기간: 5~10월(8회) • 모집: 초등 20명 	청소년문화놀이터 • 기간: 6~10월(8회) • 모집: 20명 어린이문화놀이터(캘리교실) • 기간: 6~10월(4회) • 모집: 10명 어린이문화놀이터(악기교실) • 기간: 6~10월(4회) • 모집: 10명 	우리동네 숲놀이터(천문산) • 기간: 5~10월(10회) • 모집: 30명 
세대통합 어르신돌봄사업	어르신과 우리 동네 생대체험 • 기간: 6월~9월(4회) • 모집: 20명	상동 호전치 • 기간: 7~8월(2회) • 모집: 30명 	나도 캘리그래피 작가 • 기간: 5~10월(4회) • 모집: 20명	조물막 세대소통 • 기간: 5~8월(4회) • 모집: 20명 장소: 동명경로당 	세대통합스페셜세레데이 • 기간: 6월(3회) • 모집: 50명 	꽃으로 말하다(꽃꽃이) • 기간: 6월(1회) • 모집: 20명 건강한여름나기 • 기간: 6월말~7월초(2회) • 모집: 20명
가족행복 공동활동 사업	달빛가족 걷기대회 • 기간: 7~8월 중(1회) • 모집: 50명 아나바다장터 • 기간: 6, 9, 10월(3회) • 모집: 200명	상동 영랑 운동회 • 기간: 9월(1회) • 모집: 80명 상동 한장 가을음악회 • 기간: 10월(1회) • 모집: 100명	볼로천 가족글그림 축제 • 기간: 10.18(1회) • 모집: 100명 	동천 가족 농촌나드리 • 기간: 5~10월 중(2회) • 모집: 20명 	family festival • 기간: 6~10월 중(2회) • 모집: 60명 	바자회 • 기간: 9월(1회) • 모집: 50명 가족과 함께 하는 자전거여행 • 기간: 9~10월(3회) • 모집: 20명
문의	코디네이터 김 주 관 kjr2372@naver.com	대표 코디 김 현 정 bebe3355@naver.com	코디네이터 장 지 연 tjy3001@hanmail.net	코디네이터 정 유 진 bgwoman@daum.net	코디네이터 전 귀 숙 july1810@naver.com	코디네이터 조 미 진 jm0928@hanmail.net

충청남도의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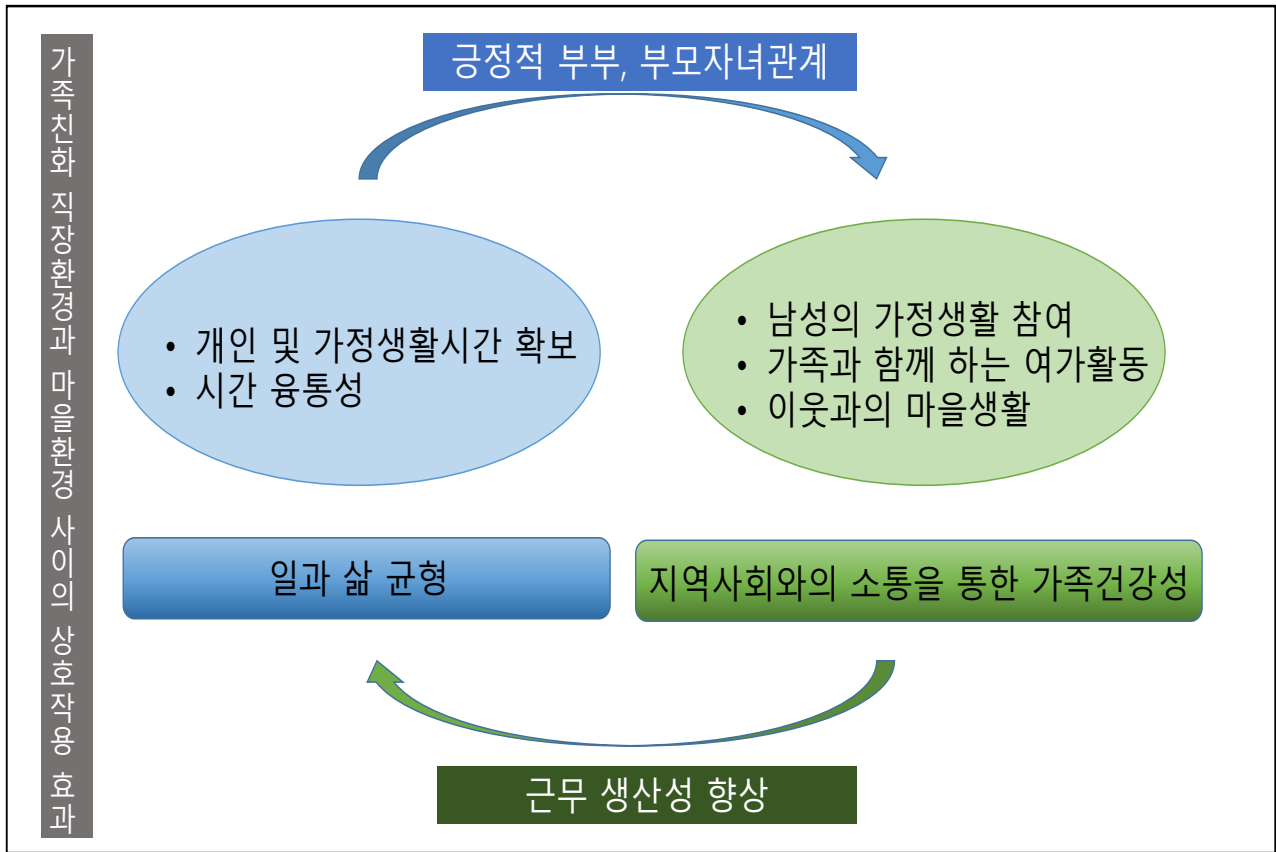
- 도시, 도농복합, 농촌의 혼재
 - 맞춤형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 가족친화환경조성 전문인력 부족
 - 인력 양성과 병행 추진
- 정책사업으로서 시도 경험 없음
 - 시범사업으로 효과 검증 및 홍보력
-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부담
 - TFT 형태의 운영, 거점센터에 전담팀 배치

장기 전략 –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장기 전략 – 가족친화마을환경 조성





충남의 가족친화 비전

- 가족과 함께(개인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일터가 있고,
 -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며,
 -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있고,
 - 이웃과 어울려 놀며,
- 건강한 삶으로 전 생애를 지낼 수 있는 곳

《부록 3》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충남도의회,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모임 시동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4.24 09:21 | 댓글 0

의원·전문가 등 14명 참여
사회 전반 일·생활 균형 증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발족식을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3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한다.

또 대전대학교 차성란 교수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김해중 회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까지 모두 14명이 연구활동에 매진한다.

김옥수 의원은 "사회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직장환경을 가족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구모임을 통해 도내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 기반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충남도의회 가족친화환경 연구모임,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 돌봄 사례 탐색...도 적용방안 논의

이정준 기자 ☞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 의원)은 14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주도형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운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서울시 은평구마을방과 후센터 이미경 단장과 아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의 박민영 이사장으로부터 각 지역의 돌봄공동체 사업 운영 우수 사례 발표를 청취했다.

특히 마을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도서관 건립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충남 지역의 다양한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은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계, 두레, 품앗이 등 선조들의 '나눔' 문화 이말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의 해법"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정책을 추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2020-08-11(화) 08:20 4월7일 수요일

뉴스티엔티

상식어 풀리는 세상

NAVER 중남·충북지사 모집
문의 042-255-4600

HOME > 정치경제 > 의회소식 > 충남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3차 회의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8.25 17:55 | 댓글 0

포스트 코로나 '돌봄 해법' 고심 및 아동·노년 돌봄 공백 해소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마을의 벽'에서 이사장은 '인택'에서 서로돌봄, 로컬팩트로의 전환을 주제로 주민 주도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주민 스스로가 복지 수준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공동체 단계별로 보조금 항목 등 지원전력도 차별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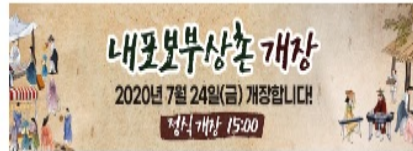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양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옥수(초선, 비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아동, 노인 돌봄 공백이 여성들의 돌봄 역할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마을활동을 육성을 통한 돌봄 공동체 지원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의견은 이후 연구모임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충남의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 연구모임'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들뉴스 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21:33)



▲ 충남도의회 가족친화연구모임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16일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 당사자인 주민을 비롯해 전문가로부터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은(미래통합당)이 좌장을 맡았고 차성관 대전대 교수가 돌봄공동체 활성화 중심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인수 충청권 건가다지원센터장과 권수인 천안백석동주민자치센터 부위원장, 이지은 드림즈마을협동조합 대표는 토론회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내 복합지역인 충남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사람간 만들기 사업 추진, 공동체 운영 르네상스 구축과 건설된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등 주민이 직접 활동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가족친화마을 조성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가정에서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원연구모임

“충남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 정책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발행자 : 김 명 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의회동)

전 화 : 041-635-5057 팩스 : 041-635-5009

인 쇄 :
